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)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운영규정



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(수산방역과), 051-720-3043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분과위원회)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(이하 "취급규칙"이라 한다) 제24조의2 제6항에 따라 동물약사심의 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 - 1.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도 및 규격 분과위원회
 - 2.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분과위원회
 - ② 분과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.
 -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이 윤리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제3조(분과위원회의 기능) 제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여 심의한다.
 - 1.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도 및 규격분과위원회는 동물약사 제도,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분류, 규격 및 기준,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(기준서) 등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
 - 2.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분과위원회는 신약 및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재평가 등 원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
- **제4조(분과위원장의 직무)**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 다만,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**제5조(분야별 전문가 협의회)** ① 취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적이거나 기술 적인 사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두게 할 수 있다.
 - ②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(이하 "전문가 협의회"라 한다)는 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(이하 "전문위원"이라 한다)로 구성하며, 전문가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 출한다. 다만,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 협의회의 전문위원 또는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정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전문가 협의회 및 협의사항은 별표와 같다.
- 제6조(임기) ①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② 전문가 협의회의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전문가 인력풀 등에서 회의안건별로 위촉된 전문가는 안 건의 심의가 끝날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**제7조(분과위원회 회의)** ① 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명,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회의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보건 및 재산의 보호,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 다.
 - ④ 회의결과 등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(이하 "수품원"이라 한다)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자료제출보호 등 기타 사유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분과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의 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원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전문가협의회 회의) ① 원장은 심의·협의 안건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가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협의회 회의에 관하여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,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'분과위원회'는 '전문가협의회'로 제7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'분과위원장'은 '전문가협의회 위원장'으로 본다.
- 제9조(전체회의 및 합동회의) ①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를 위 워장 주재로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전문가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합동회 의시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제10조(위원의 배제 등)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이해 당사자의 제척신청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.
 - ② 위원은 회의시 지득한 비밀,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·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11조(전문가 등의 출석요구 등)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 전문가·참고인 등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박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전문가·참고인 등은 분과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12조(의사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3조(의결의 효력) ①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.
 - ② 전문가 협의회가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장 이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제14조(연구위원 등) ① 취급규칙 제24조의2 제6항에 따라 임명된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조사·연구
 - 2. 동물약사 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·연구
 - 3. 수품원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·연구
 - 4.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공정서 또는 기준서 편찬지원
 - 5.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
 - ② 연구위원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·요약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시 제시하여야 하며, 조사·연구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.
 - ③ 연구위원은 수산방역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- 제15조(연구비 등 지급) 취급규칙 제24조의2 제8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 다.
 - 2. 위원 및 연구위원이 공무로 국내·외를 여행할 때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
 - 3.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사·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원장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·여비·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- 4.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·참고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6조(준용)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물약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.
- 제17조(재검토기한)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13호, 2021, 2, 24.>

이 예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/ 서식

[별표] 동물약사심의위원회 기구표 및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 협의사항(제2조 및 제5조 관련)